

제 81호
1981. 1.10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박영수
편집: 문화공보관 박종우
전화: 75-7834
인쇄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화: 75-6090

시보

차례

◎ 규 칙	
제 1885 호: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.....	3
◎ 고 시	
제 3 호: 정정	4
◎ 사 명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1088

규 칙

서울특별시 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
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

1980년 1월 10일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885 호

서울특별시 광고물등관리법시행
규칙 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을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중 "사진" 다
음에 "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장
소가 표시된 위치도면"을 삽입하
고,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
제 1 항 제 1 호(원색도안제외) 및
제 3 호의 구비서류외에 허가증 원
본을 첨부하여 기간 종료 7 일 이
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4 조에 제 4 항 및 제 5 항을 다음과
같이 신설한다.

④ 구청장은 광고물 제작업자가 법
또는 이 규칙에 위반되는 옥외
광고물등을 제작하였을 때에는 등
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⑤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이 취
소된 광고물 제작업자는 등록이 취
소된 날로부터 6 월이 경과한 후가
아니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.

제 13 조 제 1 항 중 별표 3, 별표 5, 별
표 6, 별표 8 의 표시위치란 제 1 호와
제 3 호, 별표 9, 별표 10 및 별표 11 의
허가여부 및 기간년의 "360 일"
"180 일" 및 "30 일"을 각각
"1년", "6월" 및 "1월"로
한다.

제 15 조의 2 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제 15 조의 2(심의위원회) ① 구청이
광고물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회"
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심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
청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설치기준을 갱신하고자 할때
2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
하는 사유가 있을때

③ 심의회는 광고물에 관한 사항에
대하여 구청장에게 정의할 수 있다

④ 심의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한 위
원 9 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
건설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제공
무원과 사제권위자, 광고물 제작업자
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⑤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 (경과조치)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한 광고물의 기간은 허가된 기간에 따른다.</p> <p>③ (옥상광고물의 특례) 1980년 2월 4일(광고물등 관리법 발효일) 현재 허가된 유효한 옥상광고물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단위로 한다. 위 광고물중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것은 이규칙 공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되 그 허가</p>	<p>기간은 기존허가 만료 익일부터 기산한다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 <p>고 시</p> </div> 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 정</p> <p>시보 제790호(80.7.14)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고시 제260호(80.7.14중)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81. 1. 8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	--

구	분	오	정
소	제	지	지
년	지	적	적
소	유	자	자
년	제	지	지
소	유	자	자

석동구군자동 205-1117 155명 최완문	석동구군자동 205-1117 155명 최완문, 음상철
석동구군자동 205-800 374명 최완문	석동구군자동 205-800 374명 최완문, 음상철

사 령

◎ 1981. 1. 4

마포구세무 2과 이 현 규
 지방행정서기

지방행정주사보에 추서함.

서울특별시장